

의안번호	2206897
의 퇴 인	임이자의원
회 답 일	2025.1.7.
추계번호	24B62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의5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4조의5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34조의5에 따라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의무적으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기준 강원도 동해시의 전처리시설이 2020년도부터 운영 중이며, 경상북도 성주군, 영양군, 청도군, 충청북도 단양군에는 현재 설치 중임

[표 1] 재활용가능자원 전처리시설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	용량 (톤/일)	가동연도	설치비	운영비
강원	동해	130	2020.9월	7,767	2,099
경상북도	성주	40	설치 중 (‘22~‘25)	4,249	—
	영양	17	설치 중 (‘25~‘27)	2,091	—
	청도	30	설치 중 (‘24~‘26)	4,080	—
충청북도	단양	70	설치 중 (‘25~‘26)	10,172	—

자료 : 환경부 제출자료

- 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1일 기준 종량제봉투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산출하였을 때, 전처리시설의 설치비는 1개소당 125억 4,600만원, 운영비는 연 16억 4,200만원으로 추정됨
 - (설치비) 102톤/일(종량제봉투 평균 배출량)×123백만원/톤¹⁾
 - (운영비) 102톤/일(종량제봉투 평균 배출량)×16.1백만원/년²⁾
- 안 제34조의5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전제조건으로서 향후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의 수요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예측이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

1)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표준공사비에 따르면, 1일 기준 배출량이 90톤을 초과할 경우 설치비용은 톤 당 1억 2,300만원임

2) 현재 운영중인 동해시 전처리시설 운영비를 기준으로 운영비 단가를 산정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